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77

발의연월일: 2024. 7. 8.

발 의 자:고민정·조 국·박지원

이성윤 · 장경태 · 김준형

김성회 · 김한규 · 윤건영

박상혁 • 한병도 • 김영배

정태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막말 논란 등으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권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선출·지명 과정의 투명성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

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(GANHRI)은 국가인권기구 정기등급심사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 등급을 재승인하면서, '단일독립선출위원회'를 설치해 인권위원을 선출·지명할 수 있도록하는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.

현재 인권위원 11인 중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인에 대해서만 후보 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,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 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

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, 위원후보자 공개 등을 통해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4항, 제5조의2 신설)

법률 제 호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중 "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"을 "인권"으로, "위원"을 "제5조의2의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후보자 중에서 위원"으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조의2(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) ①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 - ③ 추천위원회에서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가 인권위원회 공보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④ 추천위원회는 위원후보자 대상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	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국회,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	4
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	<u>인권</u>
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	
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	제5조의2
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	의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
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<u>위원</u>	추천한 위원후보자 중에서 위
을 선출·지명하여야 한다.	<u>원</u>
⑤ ~ ⑧ (생 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5조의2(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)
	①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후
	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
	회에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(이
	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둔
	<u>다.</u>
	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5인
	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. 이
	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제5
	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
	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
	<u>다.</u>
	③ 추천위원회에서 위원후보자

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추천위원회는 위원후보자 대상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따라야 한다.

⑤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